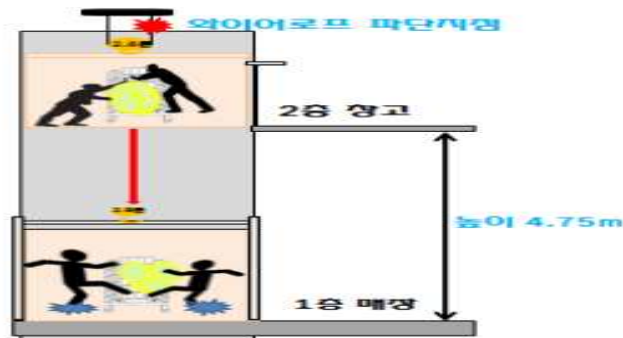


일반작업용 리프트의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부상

재해개요

○○시 ○○○유통 창고에서 작업자 2명이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에서 무 15자루가 실려 있는 대차를 내리던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 부상당한 재해

재해발생 상황도



재해발생 원인

-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 낙하방지장치 미설치
- 작업시작 전 점검 미 실시
- 작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미 실시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일반작업용 리프트 낙하방지장치 설치
 -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가 불시에 낙하하는 경우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낙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
-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실시
 - 작업을 시작 전 일반 작업용리프트의 방호장치·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및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
- 작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실시
 - 정격하중 500kg 이상이며 양정이 3m가 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